

민원

HOME > 나의 이용내역 > 민원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형 민원은 조회하기 위해 민원신청번호 또는본인인증수단(공공 I-PIN), 휴대전화,
공인인증서)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입력사항

기본정보

추가정보

통지방식	홈페이지
민원 확인 방식	보안형 간편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 이후 본인인증 혹은 신청번호 입력 후 확인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 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5-04-22 15:49:10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내용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첨부와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20150415150XXXXXX.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담당자(연락처)	이나은 (02-2110-1564)	신청번호	1AA-1504-112474
접수일	2015-04-23 18:54:2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4-283770
처리 예정일	2015-05-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5-01 14:23:04
처리결과(답변내용)	<p>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p> <p>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에 청구하신 사항이 우리 위원회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p> <p><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관련 ></p> <p>(1) 귀하께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p> <p>○ 법 제22조의3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법 제22조의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중에서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p>

* ① 제22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 ③ 재무건전성
- ④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5.3월 기준 64개 사업자 91개 사이트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1. 귀하께서는 음란물 목록을 통한 조치만 대상으로 하는지 그 밖의 기술적 조치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①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는 조치, ②인식한 정보에 대한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인식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유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④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조치를 말합니다.

-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는 조치는 검색어 기반(이것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목록을 통한 조치’로 보입니다), 해시 기반, 특징 기반 기술적 조치를 불문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저작권」의 입법례와에 거의 유사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법 대통령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적 조치란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상에도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개발된 필터링 기술들은 저작권이나 음란물을 불문하고 검색어뿐만 아니라 해시값이나 DNA값을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2. 귀하께서는 음란물 목록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기준 DB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DB를 기준 DB로 이용하도록 사업자에게 권장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하께서는 음란물 목록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 콘텐츠의 위법성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정법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고 합니다)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시정요구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시행령】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4. 귀하께서는 목록외 어떠한 기술적 조치를 지칭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시행령 제30조의3의 기술적 조치란 ①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는 조치, ②인식한 정보에 대한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인식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유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④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조치를 말합니다.

(2)-5. 귀하께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PC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유형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라 함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필터링 기술을 뜻하고 이용자 개인의 PC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유형을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3)-1. 귀하께서는 웹하드 서비스의 가입 이용자 정보를 보관대상으로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보관하여야하는 대상은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 내용을 뜻합니다. 본 법은 개인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므로 가입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2. 귀하께서는 보관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 보관 대상은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 내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정보 게시물에 대한 검색차단 등 조치이력 및 24시간 상시적용 기록, 업/다운로드된 불법정보 콘텐츠명 및 특징점 추출요청 시간 등 로그기록 등이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 관련 >

(4)-1. 귀하께서는 차단수단 삭제나 미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문의하셨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확인 주체는 위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인 국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알뜰폰)입니다.

(4)-2. 귀하께서는 설치된 앱의 삭제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 이통3사(알뜰폰 포함)가 개발·제공하는 차단수단의 경우, 이통사가 삭제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개발사가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경우, 앱 개발사가 이통사(알뜰폰 포함)에 삭제 유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3. 귀하께서는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 삭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과 별개로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보안관앱의 경우, 청소년이 게임이나 인터넷, 기타 앱을 실행 하면 서버에서는 전달된 결과에 따라 앱을 제어 합니다. 그러나 앱이 15일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이 앱을 삭제하였다고 의심되어 삭제의심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4)-4. 귀하께서는 삭제나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셨습니다.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되 법개정 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작동 여부를 월 1회 특정 시점에서만 확인할 예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결 어 >

○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이나은 (전화 2110-1564, nlee@kcc.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필수)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 해결
- 부분해결
- 미해결

초기화

